

부속서 VIII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MFN 면제목록

제1부

아이슬란드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모든 분야	<p>다음과 같은 북유럽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프로젝트 및 수출에 대한 보증 및 대출 (북유럽투자은행) -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북유럽산업기금) - 국제적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의 대한 자금 조성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북유럽기금) -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기업*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북유럽환경금융사) 	<p>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p> <p>* 북유럽 기업과 협력하는 동유럽 기업에 적용</p>	무기한	북유럽 협력의 유지 및 발전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서비스 : 시청각프로그램 전송	유럽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지침(No. 89/552)과 같은 규정의 이행을 위하고, 그와 합치되게 채택된 조치 및 특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내국민 대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럽 원산지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조치	국경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유럽 경제지역 협정의 그 밖의 유럽국가 당사국	무기한	특정한 언어정책 목적의 달성 및 유럽 방송분야 내에서 문화정체성의 증진
시청각 서비스 : 영화영사물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특정 유럽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한 MEDIA 및 EURIMAGES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에 합치되게 혜택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	유럽국가	무기한	관련국가 간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영화영사물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북유럽영화 및 TV 기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무기한	북유럽 협력의 유지 및 발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에 대한 정부간 기본 협정 및 복수국 간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써, 그 협정들이 대상이 되는 시청각물에 대하여, 특히 배급 및 자금조달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 (다음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이 이미 존재하거나, 협상중에 있음 : 프랑스, 캐나다)	무기한 (국가 간 문화적 유대의 증진은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 없음)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관련 국가들 간 문화적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제2부

리히텐슈타인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서비스	시청각물 분야에서 공동제작에 대한, 특히 자금조성과 배급과 관련하여,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 협정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	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	무기한	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
	MEDIA 및 EURIAMGES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그리고 국경 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과 같은 약정을 이행하고 시청각물 및/또는 특정유럽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상영시간의 할당과 관련된 조치	유럽국가	무기한	장기간 지속된 문화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목적의 증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운영에 대한 양허는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 될 수 있음.	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	무기한	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 그리고 공급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정된 규모의 시장에의 접근을 규율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상업적 주재의 권리 및 자연인의 주재의 권리는 리히텐슈타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름.	모든 국가	무기한	리히텐슈타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충분한 시장접근을 보장
도로운송서비스 승객 및 화물	일반적으로 양자 간 협정에 근거하여 리히텐슈타인 이외의 국가에서 등록된 차량에 의한 물품 및 승객의 리히텐슈타인 영역 내의 운송, 리히텐슈타인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경유 운송을 상호시장 접근을 기초로 규율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협정 또는 도로운송에 관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국가 (현재 약 45개국)	도로 운송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운송서비스의 다자간 자유화가 합의될 때까지 면제 필요	도로운송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특성의 고려 그리고 도로기반구조의 완전성 및 환경 보호
모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자연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양자협정에 근거한 조치	스위스	무기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포괄적인 양자 협정의 요소
	리히텐슈타인 법에 따르면 모든 분야의 자연인의 주재에 대한 권리는 리히텐슈타인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름.	모든 국가	무기한	리히텐슈타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충분한 시장접근의 보장

제3부
노르웨이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도로운송 승객 및 화물	<p>노르웨이로의 출입 및 관련 제3국 간 수송에 대한 운수권 보유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와의 기존 및 장래의 도로운송협정의 규정</p> <p>도로 연안운송도 특정 국가에게 허용 가능</p>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지역적 특성
시청각서비스 공중매체의 시청각프로그램의 전송	<p>유럽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지침(No. 89/552)과 같은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와 합치되게 채택된 조치 및 특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내국민 대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럽 원산지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조치</p>	<p>국경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유럽경제지역 협정의 그 밖의 유럽국가</p>	무기한	특정한 언어정책 목적의 달성 및 유럽 방송분야 내에서 문화정책성의 증진
시청각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배급	<p>영화 공동제작에 대한 정부간 기본 협정을 통하여 시청각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부여</p> <p>영화 공동제작에 있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간 협정에 의한 공동제작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음.</p>	모든 국가	무기한	그러한 협정의 목적은 관련국가 간 문화적 유대를 증진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 서비스: 북유럽 국가에서 영화영 사물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의 제작 및 배급	북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시청각물의 제작과 배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유럽 영화 및 텔레비전 기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부합되게 혜택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및 덴마크	무기한	관련국가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시청각 서비스 영화영사작업과 텔레비 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특정 유럽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한 MEDIA 및 EURIMAGES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에 합치되게 혜택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	유럽국가들	무기한	관련국가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모든 분야	다음과 같은 북유럽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 투자프로젝트 및 수출에 대한 보증 및 대출 (북유럽투자은행) -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북유럽산업기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무기한	북유럽 협력의 유지 및 발전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p>컴퓨터 예약시스템 및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p> <p>국내 해상운송서비스 승객 및 화물</p>	<p>- 국제적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의 대한 자금 조성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북유럽기금)</p> <p>-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기업*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북유럽환경금융사)</p> <p>컴퓨터 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는 그 모회사 또는 판매자의 원산지 국가에서 동등한 대우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음.</p> <p>국내해상운송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정의 규정</p>	<p>* 하나 이상의 북유럽 기업과 협력하는 유럽회사에 적용</p> <p>컴퓨터 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한 모든 국가</p> <p>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및 영국</p>	<p>무기한</p> <p>무기한</p>	<p>컴퓨터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자 간에 합의된 규칙의 불충분한 개발로 인한 면제의 필요</p> <p>이 협정들은 유럽경제지역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권리 이상이고, 그렇게 적용 가능</p> <p>이 면제는 이 분야에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약속의 제출을 허용</p>

제4부
스위스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서비스	<p>시청각물 분야에서 공동제작에 대한, 특히 자금조성과 배급과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복수국 간 협정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p> <p>MEDIA 및 EURIAMGES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그리고 국경 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과 같은 약정을 이행하고 시청각물 및/또는 특정유럽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상영시간의 할당과 관련된 조치</p>	<p>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현재 유럽회의 회원국 그리고 캐나다 및 프랑스와는 협정이 존재)</p> <p>유럽국가</p>	<p>무기한</p> <p>무기한</p>	<p>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p> <p>장기간 지속된 문화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목적의 증진</p>
시청각 서비스 : 지상파방송 또는 수신료의 수입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방송사에 한정	이 분야에 외국자본 참여에 대하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의 운영에 대한 양허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부여	스위스법상 동일한 근거로 방송 서비스에의 접근이 부여되는 모든 국가	무기한	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 및 공급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정된 규모(스위스의 규모를 감안한)의 시장에서의 접근을 규율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내륙수상운송	맨하임협약 (관련 추가 조항 및 의정서 포함) 및 그 밖의 유럽내륙수상운송협정에 근거한 스위스 외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연안운송을 포함한 라인강에서의 운송서비스 허가	맨하임협약 및 그 밖의 스위스가 회원국인 유럽 내륙수상운송관련 협약의 수혜국(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	무기한	내륙수상에 대한 수송능력 규율
도로운송서비스 (승객 및 화물)	상호시장접근을 기초로 주로 양자간 협정에 의하여 스위스 이외의 국가의 물품 및 승객의 스위스 내에서의 운송, 스위스에의 입국, 출국 및 경유 운송을 통제	도로운송 또는 여타 도로 운송관련 양자간 협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국가(현재 약 45개국)	도로 운송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운송서비스의 다자간 자유화가 합의될 때까지 면제 필요	도로운송 공급의 지역적 특성 감안과 도로기반구조의 완전성 및 환경 보호
모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자연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리히텐슈타인 공국 또는 유럽공동체 및/또는 그 회원국과 스위스 간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	리히텐슈타인 공국과 유럽공동체	무기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및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의 포괄적인 양자 협정의 요소